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현재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한도 인상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임.

■ 2017년 1월 현재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제안된 법안들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음.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
 -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 아울러 보험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안됨.
- 아래에서는 각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 시점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박용진 의원안).¹⁾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 외에도,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계류 중임.

- 박용진 의원은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 이에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도록 함.²⁾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됨(김정재 의원안, 김영주 의원안).**
-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 원칙³⁾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김정재 의원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김영주 의원은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및 과징금(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20% 이하)을 모두 부과하는 내용을 제안함.⁴⁾
 - 김영주 의원은 중복계약 체결 확인 내용을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함.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이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김해영 의원안).**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

2) 한편, 이에 대하여 소관위인 정무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소멸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끝난 후에 시효기간(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이 새로이 진행되는 반면, 소멸시효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 있다가 해당 사유가 끝난 후에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정무위원회는 법체계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6. 11).

3) 동일인이 2~3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치료비의 2~3배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를 상품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는 것임.

4)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위반주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보험회사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보험회사 임직원의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모집중사자의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을 제시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7. 1).

협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 이에 더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도 설명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⁵⁾

- 또한, 이러한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됨(박용진 의원안).

- 박용진 의원은 손해사정업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제3자에게 재위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 이에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재위탁을 허용하는 것임.⁶⁾
- 한편,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 시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한도 인상 등 제재 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제재의 내용을 ‘직무정지의 요구’에서 ‘직무정지’로 변경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연간 수입보험료의 20% → 50%),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연간 수입보험료의 50% → 100%), 채권·주식 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장부가액 합계액의 20% → 100%) 등임.
 -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5천만 원 → 1억 원)

5) 김해영 의원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의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탁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율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6. 12).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조정함.
 -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소유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신설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위반을 과태료 대상에서 과징금 대상으로 변경
 - 부수업무 미신고, 대주주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신설
-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함.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채권 또는 주식 소유 합계액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이종걸 의원안, 김영주 의원안).
-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을 보험협회가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임(김종석 의원안 2개).
-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임(박완주 의원안). [kiri](#)

〈표 1〉 계류의안 목록

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1인)	2016. 6. 22	자산운용비율 관련	소관위 접수
20008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2인)	2016. 7. 1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소관위 접수
20017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2016. 8. 19	업무위탁 관련	소관위 접수
20023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1인)	2016. 9. 20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	소관위 접수
20029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2016. 10. 26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	소관위 접수
20031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0인)	2016. 10. 31	기초서류 신고 관련	소관위 접수
20035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2016. 11. 1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변경	소관위 접수
20040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6. 11. 30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 관련	소관위 접수
20041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1인)	2016. 12. 6	표준약관 관련	소관위 접수
20049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2017. 1. 3	자산운용비율 관련	소관위 접수
20051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영 의원 등 13인)	2017. 1. 16	설명 의무 관련	소관위 접수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